

동물병원에서 인의약품 사용 추진

1. 대한수의사회 및 농림부에서는 지난 1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동물병원에서 인의약품 사용에 대하여 의약분업실시와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논의

2. '00.02.01, 06.10 농림부에 건의서 제출

3. '00.06.06 우리회 이우재회장 농림부장관과의 조찬회에서 해안문제등 건의

4. 지난 6월 14일 홈페이지 및 각 지부를 통하여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의약품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약 40여개의 동물병원으로부터 회신을 받아 약 200여종의약품 목록을 작성

5. 동물병원에서 인의약품의 사용에 대한 청원
우리회에서는 이우재회장의 25개 단체장의 약사법 개정청원서를 7월 6일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위)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청원소위 회부 예정

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7월 18일 개최된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었으나 약사법 내용에는 기 논의된 의약분업 관련 내용만 통과

심재철의원의 질의에 보건복지부장관은 8월 1일이후에는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함

7. 대책회의 개최

농림부,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동물약품조합은 수차례 연석회의를 통하여 이 문제를 논의함

동물병원에서 인의약품 사용에 대한 문제는 수의사의 기본권인 진료에 관한 문제이며 관련업계 및 수의계 전체에 문제 파급

보건복지부에서는 동물용의약품을 농림부가 따로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농림부에서 처리 코망

8. 보건복지부 의견(00.07.25)

전문약품에 대하여는 1년간 동물병원에서 사용토록 잠정 허용토록 조치하고 농림부는 동기간동안 해당품목을 동물용의약품으로 대체생산 또는 수입 등 조치

농림부에서는 동물용의약품으로 대체생산 또는 수입이 불가능한 희귀약품, 신약에 대하여는 미국

등 각국의 예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별도 협의 후 수급대책 강구

9. 향후 동물병원 협조사항

동물병원에서 인의약품 사용목록을 6월 14일부터 조사하였으나 전체적인 인의약품 사용실태 및 수요량 등을 예측하기가 어려워 지난 7월 24일부터 재조사중이니 전 동물병원은 사용약품에 대한 자세한 목록과 소요량등을 파악하여 각 지부에 통보요망

동물약품업체 등 관련업체에 대한 보호육성도 수의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임으로 동물용으로 대체가능한 약품은 동물용으로 대체 사용 및 개발 권장

10. 향후추진계획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의약품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동물약품협회와 협의하여 동물용으로의 대체(제조, 수입)가 가능한 품목과 불가능한 품목을 구분하여 사업추진

약사법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 검토

※ 참고 우리회에서 7월 6일 국회에 제출한 청원서

동물병원에서 인의약품 사용을 위한 약사법 개정 청원
2000. 7. 6

청 원 자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5 대한수의사회

(전화 : 031)702-8686)

성 명 : 회 장 이 우 재 (인) 외 25 인

동물병원에서는 동물진료시 대부분 동물약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수액제(하트만 등) 마취제 강심제 · 항정신성의약품 등 동물약품으로 제조 공급되지 않는 약품은 약국이나 인의약품 도매상에서 인의약품을 구입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의사의 처방전이 없이는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게 되어 수의사가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축주에게 제공하지 못하여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바, 동물약품으로 제조 공급되지 않는 인의약품은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개설자는 구입 사용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1. 동물병원에서의 인의약품 사용현황

동물병원에서는 동물진료시 대부분 동물약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수액제(포도당) 마취제 강심제 등 동물약품으로 생산 수입되지 않는 전문의약품(122종)은 약국에서 인의약품을 구입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 대상 동물병원에서는 축주의 인식변화로 최상의 진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용으로 생산·수입되지 않는 제품(흡입마취제 등)과 투약의 용이성 등 축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캡슐제제(항생제 등), 기타 소요량이 미미하거나 경제성의 이유로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생산하지 않는 품목(수액제 등)의 경우 인의약품을 사용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약분업 시행시 약사법 제21조(의약품의 조제) ④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의 처방없이 인의약품을 구입 사용할 수 없고,

인의약품도매상도 약사법시행규칙제57조(의약품 등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에 의거 동물병원에 인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임

☞ 그러나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는 약사법 제72조의 6(동물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④항의 규정에 의거 동물약품을 조제 판매할 수 있으며, 애완 동물에 대한 수술 등 양질의 진료를 위하여는 동물약품으로 제조 공급되지 않는 수액제(포도당) 마취제 등을 필히 사용하여야 함.

☞ 일본 등 외국의 동물병원에서도 대부분 동물약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동물약품으로 제조 공급되지 않는 전문의약품은 면허증을 제시하고 인의약품을 구입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2. 검토의견

의약분업의 기본정신은 인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있는 바, 동물병원에서 인의약품의 사용은 사람을 대상으로 판매 또는 치료할 목적이 아니라 동물 진료에 필수적인 약품을 구입하기 위함인바, 이는 의약분업의 기본정신에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인의약품을 사용하지 못 할 경우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국가재원의 불필요한 낭비요인으로 작용하고, 가격상승에 따른 진료수가인상으로 축주에게 경제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며, 외국에서도 동물용으로 생산하지 않는 약품은 구입을 못하게 되어 진료업무에 차질을 빚게됨은 물론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 약품은 전문인인 수의사가 치료용으로 필요한 품목들이므로 특정 관리조치를 통하여 약품사용 내역 확인 기능함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우려하는 전문의약품의 유출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들 약품은 전문인인 수의사가 치료용으로 필요한 품목들이므로 특정 관리조치를 통하여 약품사용 내역 확인 기능함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우려하는 전문의약품의 유출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3. 청원내용

보건복지부에서는 동물병원에서 동물약품으로 제조 공급되지 않는 인의약품은 수의사 면허증을 제시하고 구입 사용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약사법 개정(안)

조 항	현 행	개 정
약사법 제72조의 6 ④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의 개설지는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의 개설지는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물사육자에게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동물용의 약품이 아닌 의약품의 경우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불현황을 기록하여야 한다